

〈韓日合同 Symposium〉

國際技術協力上의 契約紛爭處理와 仲裁에 關하여

Contract Dispute Treatment and its Arbitration on
Technology Collaboration in Internationally

延世大工大講師 金 詢 根*

ABSTRACT

This is to intent of new proposal for organizing the technology arbitration organization in internationally instead of the existing organization for business & trading matters such as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ecause of to be kept the major matters in relation with technology by professional engineers as for their own engineering jobs and also develops of their own knowledges without assisting of any expert for the laws.

目 次

- | | |
|---------------------------|-----------------------|
| 1. 序 言 | 4. 韓國과 日本의 仲裁標準條項 |
| 2. 韓國의 仲裁機關發達現況과 日本의 仲裁制度 | 5. 獨立된 國際技術仲裁機關創設의 促求 |
| 3. 國際技術協力과 國際仲裁機關의 現況 | 6. 結 言 |

1. 序 言

第12次 韓日合同技術士會(82.2.25. 서울開催)에서 「國際技術協力を 위한 專門技術士의 새 役割促進方案」(A Reinforcement Proposal of quite new roles by Professional Engineer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llaboration)이라는 題目下에 韓·日間協力下에 東南亞技術移轉에 必要한 國際技術契約上의 標準約款作成促求를 提議한바 있으며, 이번에 提案하는 것은 그 續篇으로서 技術仲裁을 專擔하는 國際機構를 韓·日間부터 始作하여 汎世界로 波及되는 機構로 發展시키고저 하는 構想案이다.

그러나 專門技術士의 基本役割은 科學技術에 關한 高度의 專門的 應用能力을 遂行하는 過程에 있어서 더우기 國際間의 技術協力上 隨伴하에 誘發되는 契約紛爭이 日益增加一路에 있으나 韓國은 日本技術士法(1957年 制定)을 模倣하여 1963年 技術士法制定에서 發展하여 國家技術資格法(1973年 12月制定公布)에 이르렀으나, 西歐와 같은 엔지니어의 本質的機能中 仲裁人(Arbitrator)과 代理人(agent)役割을 法上定義에서 明記하지는 않았으나 하드레도 國際技術協力에는 特히, IBRD, ADB 借款事業等에는 役割을 하고 있고, 이것을 본받게 되어 모든 [國際間의 技術協力事業에는 慣例化되어 있는 實情에 있으므로 우리 兩國도 西歐와 같은 엔지니어의 本質的 役

割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2. 韓國의 仲裁制度發達現況과 日本의 仲裁制度

우리 나라에 있어서 仲裁制度가 發足하게 된 것은 1966年 3月 16日에 全文 18條 附則으로 된 仲裁法이 公布施行된 때부터이다. 이 仲裁法制定의 主原動力은 政府機關이 아닌 大韓商工會議所가 國際商去來의 增大와 함께 그 必要性을 切感하여 制定된 것이고, 當時 우리나라의 貿易去來活動이 活發해짐에 따라 必然的으로 많은 去來上의 紛爭을 隨伴하게 되어 外國業者로부터 claim의 提起頻度가 增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對處하기 위하여 先進諸國에서 널리 活用되고 있는 商事仲裁制度를 導入함에 앞서서 그 先行條件으로 法的基礎를 이루는 仲裁法의 制定이 時急히 要望되었다.

이리하여 大韓商工會議所가 主動이 되어 草案作成案된 것을 法制處를 거쳐 政府案으로서 國會에 提出케 되어 立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리하여 仲裁法이 公布施行되므로써 우리 나라 大韓商工會議所附設 國際商事仲裁委員會라는 仲裁法廷이 생기게 된 것이다. 仲裁法廷이 設立되면서 具體的인 紛爭에 대한 仲裁判定에 이르는 節次의 細則인 仲裁規則은 全文 62條附則으로 制定하였고, 1966年 10月 13日 制定分은 1973年 2月 17日 改正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의 仲裁法과 日本의 民事訴訟法(1980年法律第29號로서 仲裁의 法的根據는 第786~805條)에는 外國仲裁判定의 承認·執行에 關하여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該當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나라와 日本에 있어서도 涉外私法上의 原則에 의하여 外國仲裁判定이 그 準據法上 有效하고 拘束力이 發生하고 있는 以上 國內의 公秩序에 違反하지 않는 限 當然히 承認·執行이 認定되는 것이다.

1668年 3月에는 우리 나라도 外國仲裁制度의 承認과 執行에 關한 「外國仲裁制度의 承認 및 執行에 關한 UN協約(1958年 6月 10日의 New York Convention)」의 加入을 위한 大統領의 署

名을 받았고, 1973年 1月 30日에 非常國務會議에 批准(ratification)을 받아 同年 2月 8日 加入文書(instrument of accession)를 國際聯合事務總長에게 寄託(edposit)함으로서 同年 5月 9日 同協約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發效하게 되었다. ※日本도 上記 協約에 加入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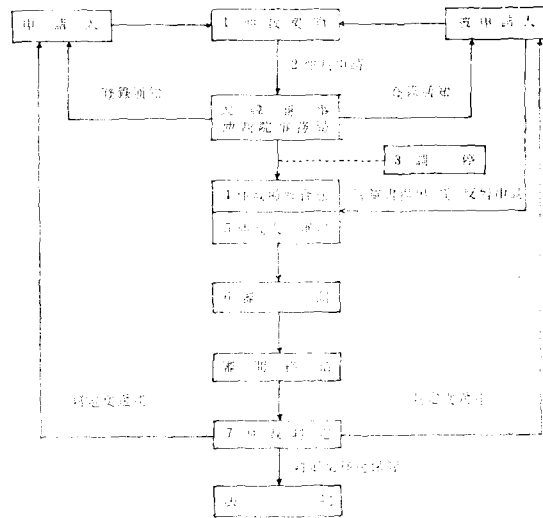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仲裁制度는 名實共히 國內外的으로 公認된 商事紛爭機構로서 갖추게 되었다.

이 외에, 國內에는 1981年 3月 31日 言論仲裁委員會가 發足되어 西歐의 先進國처럼 「市民과 言論間의 對話를 통한 言論仲裁를 하는 窓口役割로서」 年間 30餘件以上의 言論仲裁申請을 處理하고 있다.

또 技術仲裁에 關하여는 韓國의 技術士會와 技術用役協會가 中心이 되어 西歐와 같이 獨立된 (商事仲裁에서) 機構를 創設할 것을 現在檢討中에 있다.

大韓商事仲裁院에서 施行하고 있는 商事仲裁의 節次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仲裁節次進行案內



參考로 적으면 日本에는 3個의 仲裁機關이 있는데 (i) 日本海運集會所(Japan Shipping Exchange Inc.)라 稱하여 런던海運去來所를 模倣하여 1921년에 設立하여 海事紛爭을 專擔處理할 仲裁部署를 두게 되었다. 이 日本海運集會所는 海事仲裁規則과 海事仲裁委員會의 規則(1962·)

을 準用하고 있다. (ii) 日本國際商事仲裁協會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는 1950年 美國仲裁協會(A.A.A.)를 본따서 日本商工會議所에 依하여 設立되어 國際貿易紛爭의 解決을 專擔하고 있다.

이 協會는 1971年 2月 1日부터 施行된 商事仲裁規則(日本語 및 英語共用)

協會의 仲裁人團(Panel of Arbitrators)은 1978年 5月 31日 現在 多國籍專門職人士들로 205名에 이르고 있다.

(표 1) 日本國際商事仲裁協會의 仲裁人構成表

國籍別	人員數	專門職別	人員數
日本	174名	實業界	87名
美國	12名	法曹界	97名
獨逸	7名	學界	21名
英國	6名		
瑞西	3名		
佛國	1名		
伊太利	1名		
뉴질랜드	1名		
計	205名	計	205名

(iii) 建設工事紛爭과 解決에 관한 中央 및 地方調停委員會 建設業에 관한 法(1949年 法第100號)은 第3-2章 “建設工事 契約에 關한 紛爭解決(第25~25-4)”에서 建設工事로부터 發生하는 紛爭의 解決을 위하여 詳細한 規定을 두고 있다.

同法第25條에는 建設工事契約에서 發生되는 紛爭은 仲裁·調停 또는 斡旋에 依하여 解決하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紛爭解決에 關한 調停委員會의 設置根據를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建設工事紛爭의 解決에 관한 地方調停委員會는 東京都·北海道·大阪·京都와 43個縣에 1個씩을 두고 있다. 建設工事紛爭에 관한 中央調停委員會는 建設省에 設置되어 있으며, 同中央調停委員會는 여러 地方調停委員會와 共存을 하면서도 이들이 上級審이 아니며 仲裁規則도 서로 獨立의으로 갖고 있다.

3. 國際技術協力과 仲裁機關의 現況

3.1. 國際技術協力과 不公正指摘事項

1981年 4月에 發效된 獨點規制 및 公正去來法에 依據하여 不公正指摘事項은 다음의 8個 事項을 주로 하여 國際契約의 不平等함을 是正한 바 있다.

- (1) 輸出地域制限
- (2) 損害賠償請求不能
- (3) 契約期間滿了後, 技術使用制限
- (4) 部品購入先指定
- (5) 改良技術의 一般의 提供
- (6) 廣告, 販賣窓口 및 價格制限
- (7) 不當한 技術料(Royalty) 賦課
- (8) 一定水準의 市場占有率의 維持要求

公正去來法發效後 1981年 4月부터 1983年 3月 31日까지 技術導入 582件, 借款 60件, 合作投資 55件 등 合計 697件의 國際契約이 當國의 許可를 받기 위해 申告되었으나, 其中 38.9%에 該當하는 326件이 不公正去來條件을 담고 있는 不平等契約이었다고 한다.

3.2. 國際契約上的 國內에서의 商事仲裁判定

大韓商事仲裁院이 集計한 國際契約上的 商事仲裁申請을 받아서 判定에 이른 事例를 主要業務內容別로 分類하면 표-2와 같다. 其中 技術導入關係로 仲裁判定된 外國의 事例一件은 日本과의 Royalty 支拂關係였든 것이다.

(표 2) 國際契約上的 商事仲裁判定件數事例表

業務內容	國內의 外國과의 會社 間關係		合計
	國內	外國	
品質不良事例	5	19	24
契約違反事例	5	15	20
其他違反事例	4	4	8
建設工事 및 技術導入	2	1	3
合計	16	39	55

* 期間: 1968年 4月 申請부터 1982年 1月 判定까지의 事例

3.3. 國際商事仲裁機關과 西歐의 仲裁制度概要

主要한 國際商事仲裁機關은 표-3과 같다.

西歐의 美·英·獨 三國의 大略的인 仲裁制度는 다음과 같다.

美國：全國 統轄組織 또 美國仲裁協會(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가 1926年에 設立되어 美國唯一의 仲裁機關으로서 美國 全域에 亘한 仲裁를 掌握하고 있다.

이 團體는 非營利私 的 團體로서 構成會員은 各種 會社, 勞組, 業協會, 法律事務所와 個人으로 되어 있다.

仲裁節次 또는 聯邦仲裁法, 州仲裁法, 州仲裁法이 없는 곳도 Common law 에 따라 그節次가 進行된다.

建設工業仲裁에 關하여는 1966년까지는 美

國建築士協會 標準約款(AIA 約款)에 따라 제각기 當事者가 一人의 仲裁人을 選擇하여, 그 二人의 仲裁人이 第三者의 中立의 仲裁人을 뽑거나 或은 仲裁人 全員을 商事規則(Commercial Rules)에 따라서 A.A.A. 가 定하거나 어느 方法에 依해서나 仲裁人을 定해왔으나 이 方法으로는 當事者에게서 選出된 仲裁人이 편파적 傾向으로 놓이게 되며 缺陷이 많아서 1976年 「建設業 仲裁規定(Construction Industry Arbitration Rules)이라는 統一規則이 생겨서 오늘날에는 建設業界의 大部分이 이 規則에

(表 3) 國際商事仲裁機關一覽表(SGK)

國 名	仲 裁 機 關 名 稱	關 係 當 事 國	備 考
國際機關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워싱턴(美), 가본, 상이해안 자마이카, 모스크파리(佛), 74會員國(英國 만이 원치 않음)	1966年 設立
"	The Center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파리(佛), 74會員國(英國 만이 원치 않음)	1923年 設立
韓 國	大韓商事仲裁院	서울	1980年 設立
오스트리아	The Arbitral Center of The Federal Economic Chamber		1974年 設立
西 獨	Hamburg Friendly Arbitration	함부르크	1904年 設立
日 本	國際商事仲裁協會(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	東京	1953年 設立
英 國	London Court of Arbitration (L.C.A.)	런던	1982年 設立
美 國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뉴욕	1926年 設立
和 蘭	The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롯데담	1949年 設立
伊 太 利	Association Italliana Per L Arbitrato	로마	1958年 設立
印 度	The Indian Council Arbitration	뉴테리	1965年 設立

따르고 있다.

英國：美國과 같이 統一의 仲裁機關이 없고 또 統一된 仲裁規定이 없는 것이 큰 特徵이다.

그 主된 機關은 다음과 같다.

① 英國王室建築士協會(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RIBA)

② 土木技師協會(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I.C.E.)

③ 構造技師協會(Institute of Structural Engineers=I.S.E.)

④ 王室公認積算士協會(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RICS)

⑤ 仲裁人協會(Institute of Arbitrators)

⑥ 런던仲裁判所(London Court of Arbitra-

tion)

⑦ 住宅建築會議(National House Building Council) 이러한 機關에 依存치 않고 紛爭을 解決하고 있는 實例도 많다.

西獨：仲裁에 關聯되는 機關은 美·英國과 같이 私의 機關이다. 各種業協會, 聯合會, 商工會議所 등이 仲裁節次에 關한 細則을 作成하고, 仲裁人名簿를 準備하여 仲裁에 關한 事業을 執行하고 있다. 例컨대, 建設工事に 關한 紛爭에는 西獨콘크리트 建設業會(Deutscher Betonverein E.V)와 西獨建設法 專門家團體(Deutsche Gesellschaft fur Baurecht E.V)가 共同으로 「建設工事仲裁規則(Schiedsgerichtsordnung fur das Bauwesen)을 制定하여, 그 仲裁人

候補者 名單을 作成하고 있다.

當事者의 合意에 따라 「建設工事仲裁規側」에 依한다고 定하던 民事訴訟法(Zivilprozeßordnung) 外에 이 規側에 따라 仲裁가 執行된다.

仲裁契約에 仲裁人에 關하여 規定이 없으면 各當事者는 一人의 仲裁人을 選定하게 되어 있다. (民法法 第1028條 그러나 實地 또는 三人의 仲裁人을 쓰는 경우가 많고, 이 第三 仲裁人(Ohmann)은 大學卒, 司法試驗合格者(辯護士 或은 判事)라야 한다.

4. 韓國과 日本의 仲裁標準條項과 技術仲裁上의 問題點

仲裁는 仲裁節次를 管理하는 仲裁機關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이러한 仲裁機關으로는 臨時的·裁機關(ad hoc arbitration)과 常設的 仲裁機關이 있으나 어느 기관에 의한 것이든 仲裁判定의 效力面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國際貿易紛爭의 處理에는 仲裁判定節次에 關한 事務遂行 能力面에서 常設仲裁機關이 臨時仲裁機關 보다 效率的이므로 이를 利用하는 경향이 크다. 어느 方式의 仲裁를 利用하던 간에 仲裁의 基本的 要件은 紛爭當事者間의 仲裁契約(institutional arbitration)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書面에 作成되어야 한다.

仲裁契約은 買賣契約書作成時에 仲裁에 關한 條項을 設定하여 插入한 仲裁條項(arbitration clause)과 紛爭이 발생한 후에 이를 仲裁로써 解決하기로 合意하는 事後合意(submission agreement)로 나눌 수 있다.

참고로 大韓商事仲裁協會가 추천하는 標準仲裁條項과 韓·日仲裁協定과 韓·美 商事仲裁協定 그리고 日本國際商事仲裁協會에서 추천하는 仲裁條項을 여기에 紹介한다.

㉠ 大韓商事仲裁協會가 推薦하는 標準仲裁條項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 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i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契約으로부터, 또는 이 契約과 關聯하여 또는 이 契約의 不履行으로 말미암아 當事者間에 發生하는 모든 紛爭, 論爭 또는 意見差異는 大韓民國 서울特別市에서 大韓商事仲裁協會의 商事仲裁規則 및 大韓民國法에 따라 仲裁에 의하여 最終적으로 解決한다. 仲裁人(들)에 의하여 내러지는 判定은 最終的인 當事者 雙方에 대하여 拘束力을 가진다.

㉡ 韓美商事仲裁協定에서 勸告하는 仲裁條項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 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pursuant to the U.S. Korean Commerical Arbitration Agreement of December 1. 1974. by which each party here to is bound.

「이 契約으로부터 또는 이 契約과 關聯하여 또는 이 契約不履行으로 말미암아 當事者間에 發生하는 모든 紛爭, 論爭 또는 意見差異는 1974年 12月 1日字 韓·美商事 仲裁協定에 따라 仲裁에 의하여 最終적으로 解決하며 當事者들은 이에 拘束을 받는다.

㉢ 韓·日仲裁協定에서 勸告하는 仲裁條項

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a)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b)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Japan.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not so designated by the parties or is not agreed by them within 28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 demand for arbitration is received by either of

the Associations from either party,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Provided that both Associations may agree, on the application of either party to either of the Association, of either party to either of the Association, that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claimants, such agreement between the Associations within 28 days from the date of the said application,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이 契約으로부터 또는 이 契約에 關聯하여 發生하는 모든 紛爭은 (a) 仲裁가 韓國에서 行하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大韓商事 仲裁協會에서 또한 (b) 仲裁가 日本에서 行하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日本) 國際商事仲裁協會의 商事仲裁規則에 依據하여 仲裁에 付託할 것으로 한다.

仲裁場所가 當事者에 의하여 指定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兩協會中 어느 쪽인가가 當事者中의 어느 一方으로부터 仲裁申請을 接受한 날로부터 28日 이내에 當事者가 合意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仲裁場所는 被申請人의 나라로 한다. 그러나 兩協會는, 當事者中의 어느 一方으로부터 兩協會中 어느 쪽인가에 대하여 申請이 있으면, 仲裁場所를 申請人의 나라로 할것을 合意할 수 있으며, 兩協會間의 그러한 合意는 當事者를 拘束한다. 前記의 申請日로부터 28日 이내에 兩協會間의 合意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仲裁場所는 被申請人의 나라로 한다.

㊤ 日本海運集會所가 마련한 標準仲裁條項

“Any dispute arising from this charter (or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held in TOKYO by the Japan Shipping Exchange, Lt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Maritime Arbitration Rules of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nc.” and the award given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both parties.

㊦ 日本國際商事仲裁協會의 標準仲裁條項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

tract, or for the breach there 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The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 日·美商事 仲裁決定에서 권장하는 仲裁條項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here 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pursuant to the Japan-American Trade Arbitration Agreement, of September 16, 1952, by which each party here to is bound.

㊨ 日本 國際商事仲裁協會와 英國런던 商業會議所 및 런던 仲裁裁判所間의 仲裁協定이 권장하는 仲裁條項

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e rules in force at the date of this contract of (a) the London Court of Arbitration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the United Kingdom or (b)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Japan.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not so designated by the parties or is not agreed by them within 28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 demand for arbitration is received by the court or the Association from either party,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Provided that the court and the Association may agree, on the application of either party to the court or the Association, that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claimants, such agreement between the court and the Association being binding upon both parties. Failing such agreement between the court and the Association Within 28 days from the date of the said application,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위에서 보다시피 韓國과 日本의 仲裁條項은 거의 商事仲裁 規則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日本에서는 海運만은 別途의 海事仲裁規則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시피 高度의 專門技術을 必要로 하는 技術仲裁을 一般商事仲裁에 委任시키고 있는 現實을 脫皮하여 專門技術士가 本質的 機能을 되찾는 視點에서 技術仲裁을 獨立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國際間的 技術協力增進傾向에 隨伴되는 契約紛爭에 對備하는 一方途로서 技術士의 本然 義務를 갖게 될 것이다.

5. 獨立된 國際技術 仲裁機關創設의 促求

現今까지 專門技術士가 技術仲裁을 위한 獨立된 國際 機構의 創設을 提案했다는 報道를 들은 바는 없지만 既存機構인 FIDIC에 技術仲裁을 위한 傘下機構를 두어 技術問題에 關聯된 모든 것은 仲裁을 包含해서 技術士가 스스로 解決한다는 自覺心을 이르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卽 國際間에 技術協力は 漸次로 增大하고 있고 이에 隨伴되는 契約紛爭도 比例한다고 豫想되므로 技術仲裁은 技術士 自身の 일로 우리가 解決하자는 것이다.

參考로 摘記하건데 표-4는 仲裁에 關한 國際協約 事項의 最新目錄으로서 國際間的 商去來上 또는 技術協力上 留意해 둘 事項인 것이다.

6. 結 言

韓國의 大韓商事 仲裁院과 外國 및 國際機關과 仲裁協定 締結된 나라는 11個國으로서 日本

은 23個國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도 漸次擴大해 가고 있으나, 國際技術協력에 直接, 間接으로 參與하고 있는 專門技術士가 이에 對한 關心度를 提高시켜 앞으로 誕生할 것으로 期待되는 技術仲裁의 獨立機構의 創設促求에 이바지 하고져 小生の 少考를 적어본 것이다(1983.10.31 脫稿)

仲裁에 關한 國際協約 事項 目錄

- 1) 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s(仲裁條項에 관한 제네바 議定書)(1923年 9月 24日)
- 2) 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外國仲裁判定的 執行에 관한 제네바 協約)(1927年 9月 26日)
- 3)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外國仲裁 判定的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1958年 6月 10日)
- 4)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國際商事仲裁에 관한 國際聯合決議文)(1958年 6月 10日)
- 5)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一方國家와 他方國家國民間的 投資紛爭解決에 관한 協約)(1963年 3月 23日)(Washington 協約)
- 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Convention)(國際商品 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
※ 1980年 4月 11日 埃智利 Vienna에서 열린 國際商品 賣買契約에 관한 國際聯合會議에서 採擇한 것으로 UN本部에서 加入 促進中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現在 加入 檢討中에 있음.
- 7) 「Uncitral Arbitration Rules」(1976. 4. 28 議決, 1976 12. 15 勸告決議案 採擇함)(全文41個條)